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. 4. 15 선고 2014가단1024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2015. 3. 4.

판결 선고2015. 4. 15.

주 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,

가. 피고 B, C은 아산시 E 대 1860m²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41m²를 철거하고, 위 부지 141m²를 인도하라.

나. 피고 D는 아산시 E 대 1860m²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40, 41, 42, 43, 44, 45,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목조 와가 슬레이트 단층 주택 62m², 같은 감정도 표시 46, 47, 48, 49, 50, 51,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목조 와가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34m²를 철거하고, 위 부지 96m²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소장,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(다만 F, G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고, H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).
2. 피고 1, 2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3. 피고 3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양석용

별지